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21
----------	------

2023년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3일 김춘곤 의원(찬성 36인)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춘곤 의원)

1. 제안이유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적합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서울특별시 청년장해 제대군인 관련 사업 현황

- '22년 9월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서울시의 2~30대는 1,89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준 : '22.9월 국가보훈부 통계)

구 분	총 계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합 계	222,576	33,718	150,405	22,345	66,694	10,411	5,477	962
20대	1,550	298	28	4	504	90	1,018	204
30대	8,323	1,592	306	53	6,720	1,286	1,297	253
40대	15,908	2,486	3,383	560	11,636	1,772	889	154
50대	21,224	3,096	9,226	1,333	11,256	1,656	742	107
60대 이상	175,571	26,246	137,462	20,395	36,578	5,607	1,531	244

- ‘21년 서울시에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 접수된 20~30대 청년은 361명이며, 이 가운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청년은 232명(64%)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청년층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2년 10월 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사업은 최초 ‘22년 상이군경회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해당 조례 제정 등을 통해 ‘23년부터 복지재단을 통해 대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시설 현황

- 시설현황 :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센터 1개소(개소일자 : '22.3.25.)
 - 위 치 : 서울시청 시민청 B1 청년활력소 內
 - 운영인력 : 총 4명 (센터장 1, 취업상담원 1, 심리지원,회계 1, 변호사 1)
- 주요사업 :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등
 - 부상제대군인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사고처리, 유공자 등록절차, 심리·법률상담 접수)
 -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상이등급 조정까지 법률상담 연계(복지재단 공익 법센터 전담 변호사의 전문상담 및 법률지원)
 - 예방적 심리상담부터 심리위험 청년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 대행기간 : '23.1.1 ~ ' 25. 12. 31. (3년)

<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예산 지원 현황

연도	2023년	2024년(안)
예산 총액	509,600천원	470,418천원
구분	· 인건비 : 255,600천원 · 운영비 : 27,000천원 · 사업비 : 227,000천원	· 인건비 : 198,418천원 · 운영비 : 17,000천원 · 사업비 : 255,000천원

- ‘23년 11월 말 기준 센터에서는 총 352건의 종합상담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세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법률·심리·취업 지원 실적

해당연도		2022년 추진실적	2023년(계획)	2023년 11월 말 추진실적
종합상담		267건	-	352건
법률 지원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	12건	-	2건
	의료자문	6건	-	6건
	소송대리	1건	-	3건
심리 지원	개인상담	127회	500회	157회
	자조모임	20회(94명)	20회	20회(140명)
취업지원		114건 (단순 정보 연계)	20회 (취업특강)	20회(100명) * 취업 : 5건(3명)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 본 개정안은 2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어문규정에 맞추어 정비해 조례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별도의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서울시는 그 동안 보훈 사각지대라 할 수 있었던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장해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음.
-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는 2022년 3월 25일 개소되어 약 2년간 운영되며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센터가 곧 운영 3년차에 들어가는 만큼 센터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방식의 점검(대행방식) 등을 포함한 중·장기운영 계획 등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2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3일

발 의 자: 김춘곤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춘선, 박환희,
소영철, 신동원, 신복자,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병운, 이상욱,
이은림,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한 신,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6명)

1. 제안이유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제1호”를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를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은 「병역법」”을 “함은 「병역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출자·출연기관에게”를 “출자·출연 기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2. “장해”라 함은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p> <p>3.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p> <p>4. “전상 청년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p>	<p>제2조(정의) ----- -----.</p> <p>1. -----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p> <p>2. -----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 ----- ----- -----.</p> <p>3. ----- 함은 「병역법」----- ----- ----- ----- -----.</p> <p>4. -----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p>

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상 청년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라 함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국가보훈부장관 -----

5. -----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 국가보훈부장관 -----

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생략)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로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훈

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제2호

국가보훈부장관

7.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1. (현행과 같음)

2.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3.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4. (생략)

제8조(대행·위탁) ① 시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① 시장은 청년 장애 세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제공자에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4. (현행과 같음)

제8조(대행·위탁) ① -----

----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출자·출연 기관에게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① -----

----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② -----

-----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문서번호

2023081700000010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김춘곤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수일 : 2023.08.17.

회신일 : 2023.08.21.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한 조례안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